

의안번호	2212979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계번호	25B52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 신설 (수리 용이성 등급제)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제1항) 1. 수리할 권리 관련 정보 제공의 수준 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3. 수리의 난이도 4. 부품 공급의 원활성 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6.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의2 (수리 용이성 등급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 대가 지급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수리권 적용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등급 부여 관련 사업의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한국환경공단 위탁수행 등급 부여 관련 사업 내용 및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2025년 기준)
1	포장재질·구조평가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584
2	폐자원에너지 품질 등급제	고형연료제품(SRF)의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가지 품질 기준을 토대로 평가 등급을 부여	3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등급분류 의뢰 건수 및 평가 단가 등 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